

철도파업으로 인한 대체기관사가 투입될 경우,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

<보도 내용 (한겨레, 8.28) >

◆ 철도 파업에 ‘특사경 투입’ 추진. “경력 없어 안전 위협”

- 비전문인력인 철도경찰을 대체기관사로 투입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
- 대체기관사 투입은 헌법상의 권리인 철도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

□ 철도노조의 파업 시 철도 대체기관사를 투입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철도 노조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대체기관사 교육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상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*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.

* 철도안전법상 신체·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(철도공사 주관 수도권 광역전철)에 대한 실무수습훈련 400시간 또는 6,000km이상 실무수습 필요

○ 또한, 외부 대체인력(군 인력, 철도경찰 등)은 최근 출퇴근 시 혼잡도 증가로 인해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 전철에 대부분 투입될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, ‘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행위’ 라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과거 ‘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’이라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, 법원은 군 인력 투입 결정은 불법이 아니라며 철도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(2017가단5169927)하였으며,

○ 오히려, 해당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운행은 필수유지업무이므로, 철도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체기관사 투입은 노동조합법*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*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: 필수공익 사업(철도운영 등)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파업참가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(하도급) 할 수 있음.

-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철도 노조 파업 발생 시 국민들의 열차 이용에 불편이 우려된다”면서, “특히,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의 출퇴근 시 혼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석 (044-201-4825)

